

목회신학원 운영규정

제 1조(명칭) 본 신학원은 대신대학교 부속 총회인준 목회신학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 2조(교육과정) 본원 안에 목회연구과정과 평신도과정을 두며, 본원의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

1. 기초과정

2. 심화과정을 둔다.(2017. 08. 28 개정)

제 3조(목적) 소속된 교역자 후보생 및 평신도들을 신구약 성경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조에 기초하여 훈련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 4조(경비와 유지방법) 본원 운영 경비는 입원금, 수강료,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되 본원에서 예산을 세워 본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 5조(교무위원회) 본원의 제반 학사운영을 위한 사항은 본교 교무위원회에서 결의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원장이 된다.

제 6조(학생모집) ① 모집인원은 과정별로 각각 약간 명씩 3월과 9월에 모집한다.(2017. 08. 28개정)

② 지원자격

㉠ 목회연구과정은 본원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거나 동등한 자격을 구비한 자.

㉡ 평신도과정은 가) 항에 미달된 자로 신학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.

㉢ 위의 지원 자격자로서 세례를 받고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
㉣ 심화과정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(2017. 08. 28신설)

제 7조(교육기간) 목회연구과정과 평신도과정은 기초과정 2분기(1년 이상), 심화과정 2분기(1년 이상)를 포함하여 4분기(2년 이상)로 한다.(2017. 08. 28개정)

제 9조(교육방안) 본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한다.

제 10조(일반직원) 본원의 업무를 위하여 약간 명의 일반직원(사무직, 기능직, 고용직원 등)을 둘 수 있다.

제 11조(보칙) 본 운영규정의 미비 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완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